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는 보통예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MMDA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 말까지 아래 우대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면제 통장 가입고객은 제외하며, 이 예금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후 재가입하는 고객 또한 제외합니다.
- ②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BC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2. 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동이체
- ③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를 제공합니다.
 1. 월평균잔액 50만원 이상 유지
 2.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 ④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제3항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2.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 ⑤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3.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4.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5.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6.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7.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거래

- 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Ⅱ는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2.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
-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
- ⑦ 전월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월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

- ①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이 가능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